

---

#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운영 지침

---

2023.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data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제정일 : 2019. 03. 26.  
1차 개정일 : 2019. 10. 29.  
2차 개정일 : 2020. 03. 25.  
3차 개정일 : 2021. 01. 13.  
4차 개정일 : 2021. 04. 16.  
5차 개정일 : 2022. 02. 14.  
6차 개정일 : 2023. 02. 23.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지침은 「데이터bauer 지원사업 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관리시스템”이란 데이터bauer 수요·공급기업 신청 및 데이터bauer 지원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포털”이란 데이터bauer 지원사업의 안내, 데이터bauer 지정상품 및 연계지정상품, 가공서비스 현황 등의 정보를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이 관리·운영하는 웹기반 홈페이지를 말한다. [제2조 제2호 신설 <2023.2.23.>]

제3조(적용범위) 이 운영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데이터bauer 지원사업 세부운영지침을 따른다.

제4조(업무분담) ① 협력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분야별 수요 발굴
  2. 선정평가 협력
  3. 사업관리 및 후속지원 협력
- ②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이 희망하는 데이터 상품, 데이터 가공서비스를 제공한다.
- ③ 수요기업은 사업 추진을 위해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데이터 상품, 가공서비스를 활용한다.

## 제2장 공급기업 지정 및 운영

제5조(공급기업의 역할) ① 공급기업은 전담기관이 공고한 일정한 절차를 통해 데이터bauer 수요기업에 데이터 판매 또는 가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②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이 원하는 데이터 상품 또는 가공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요기업에 데이터 상품 또는 가공서비스의 충분한 설명 및 가격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급기업은 데이터 활용을 희망하는 수요기업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데이터 상품 또는 가공서비스의 구체적인 제공 계획을 제시하고 관련 계획을 포함한 '과제협약서'와 '견적서'를 작성하여 수요기업을 지원한다.

④ 공급기업은 매칭된 수요기업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약내용대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담기관의 데이터 상품 또는 가공서비스 제공 결과 관리·감독에 최대한 협조한다.

제6조(공급기업 지정 대상 및 제한 조건) ① 공급기업 지정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 판매 또는 가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나 기관으로 한다.
2. 공급기업 중 판매기업은 원칙적으로 데이터를 직접 생산, 가공하여 데이터의 판매 뿐 아니라 처분이 가능한 정당한 권원을 보유하여야 한다.
3. 공급기업 중 가공기업은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의 인력 자원 한도 내에서 수요기업과 매칭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재하청 등의 방법으로 수요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제외)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지 않은 기업이어야 한다.
5. 그 외 구체적인 공급기업의 지정조건은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한다.

② 공급기업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여 가능 대상(기업규모 및 유형):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등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자
2. 참여 불가 대상: 세금 체납중인 기업, 부정당기업 등록, 휴폐업 기업, 단기연체 발생 기업,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기업 신용평가 B등급 미만(7년 이상 기업)

③ 공급기업의 자격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단, 협약을 체결한 공급기업의 경우 해당 협약의 종료일까지 공급기업의 자격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공급기업으로 지정된 후 지정 심사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지거나, 제공하는 데이터의 저작권·개인정보보호법·기타 현행법위반 등의 사실이 밝혀진 경우 전담기관은 해당 기업의 공급기업 자격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7조(데이터 공급기업 신청 및 지정심사) ① 전담기관은 공급기업 지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 및 지정심사를 실시한다.

② 전담기관은 공급기업 지정 신청서류를 기반으로 공급기업 심사를 위한 자격 요건 검토 후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 기업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기존에 지정된 공급기업에 대하여, 등록할 상품·서비스가 전년도와 동일한 경우 이전 지정 자료를 근거로 재지정 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전 항에 따른 재지정의 요건 및 심사기준을 간소화된 방법으로 마련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세부운영지침 및 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심사결과 공급기업 미지정 기업은 향후 재신청할 수 있으며, 재신청 시 이전 심사 미지정이력으로 인한 별도 불이익은 없다. 다만, 심사 미지정 사유가 고의로 허위 자료 제출 또는 허위 사실 기재인 경우 공급기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⑥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기업은 심사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⑦ 공급기업 자격 요건에 따른 적격성 검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기간 7년 미만 기업: 채무불이행·단기연체 없는 기업

2. 사업기간 7년 이상 기업: 채무불이행·단기연체 없고, 신용등급 B 이상인 기업.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경우 기업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불필요

3. 참여제한 조건(부정당사업체, 휴업·폐업 중인 기업, 세금체납 기업) 여부 등

⑧ 전담기관은 공급기업의 기업 역량 및 참여 목적의 적합성, 데이터 판매 및 가공 서비스 정책의 적정성, 공급기업 추진 전략의 우수성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급 기업을 평가하여 지정한다.

⑨ 공급기업으로 지정된 이후 휴·폐업, 채무불이행, 부정당기업 등록 등의 문제 발생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공문으로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⑩ 휴·폐업 변동이 발생한 공급기업은 변동 발생일로부터 즉시 자격의 효력이 중지 (협약된 경우 해약 진행)된다.

⑪ 채무불이행, 부정당기업으로 등록된 공급기업은 해당 내역이 해약되는 날까지 수요 기업과 신규 매칭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채무불이행, 부정당기업 등록 내역이 해약된 기업은 신규지정 재신청이 가능하다.

⑫ 채무불이행 발생, 부정당기업으로 등록된 공급기업이 해당 사실 발생 이전에 수요 기업과 협약하여 데이터 판매 또는 가공서비스를 제공 중인 경우 협약 기간 내 성실 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⑬ 공급기업은 지정 후 대표자, 기업명 등 기업정보가 변경될 경우 기업정보 변동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 전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⑭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한 공급기업이 해당 내용을 전담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전담기관은 위원회 검토를 통해 해당 공급기업의 지정 해약, 사업참여 제한 등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공급기업 정보, 가공서비스 및 상품정보 등록) ① 공급기업은 전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기업 정보, 데이터 상품 및 가공서비스 정보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한다.

② 공급기업이 공급기업 정보, 가공서비스 정보, 상품정보로 등록한 내용이 지정심사에 제출한 내용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 전담기관은 관련 정보 수정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공급기업 접수 시 제출한 서류와 사업관리시스템 내 입력사항이 다를 경우 해당 기업의 지정을 해약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공급기업이 공급기업 정보, 가공서비스 정보, 상품정보를 허위로 노출한 것에 대한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급기업의 지정을 해약할 수 있다.

제9조(공급기업 정보, 가공서비스 및 상품정보 변경·추가) ① 공급기업은 공급기업 정보, 가공서비스 및 상품정보가 변경된 경우 관련 정보 변경신청 절차에 따라 상품 또는 서비스 정보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공급기업의 변경 사유가 미흡하거나 변경 내용 근거가 부족한 경우 변경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며 공급기업은 변경신청 내용을 보완하여 재신청할 수 있다.

③ 상품명과 가격 등 중요 정보는 변경이 불가하며, 수요기업 공모 기간에는 모든 정보의 변경이 불가하다.

④ 공급기업 지정 공모 시 기지정된 판매기업이 데이터 상품 추가를 희망하는 경우 관련 상품추가 절차에 따라 상품추가 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승인이 된 경우 신규 상품을 추가할 수 있다.

⑤ 지정 또는 협약된 공급기업이 사업자 전환(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의 전환, 그 밖에 기타 사업의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공급기업의 자격은 자동 승계되지 않는다. 다만,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계를 허용할 수 있다.

제10조(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활용한 공급기업 홍보 기준) ① 공급기업은 데이터 바우처 사업명, 사업로고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데이터 상품, 가공서비스의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급기업의 데이터바우처 활용 홍보 가능 매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라인 매체(키워드·배너 광고, 영상 광고 및 자체 온라인 마케팅 채널 활용)
2. 오프라인 매체(신문, 방송, 잡지 및 기타 전단지 등)

③ 데이터바우처를 활용하여 홍보를 추진하는 기업은 홍보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홍보 콘텐츠 제작 시 데이터바우처 사업 명칭 및 로고, 사업전담기관 명칭 및 로고를 병기하여 제작하되 데이터 상품·가공서비스 주체인 공급기업과 전담기관이 혼동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공급기업은 공급기업 데이터 상품 또는 가공서비스에 대한 과대·과장광고, 타 공급기업을 폄훼하는 비방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이 해당 공급기업의 상품을 선정하는 경우 데이터바우처 선정에 유리한 것으로 홍보하거나, 공급기업의 데이터바우처 선정 권한을 지닌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허위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전담기관은 해당 공급기업에 경고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기업이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사업참여 제한 및 공급기업 자격을 해지할 수 있다.

### 제3장 데이터바우처 신청·선정·협약

제11조(수요기업 신청 기본 자격·조건 및 사업 운영) ① 데이터바우처는 서비스·제품 개발 및 고도화, 빅데이터 분석, AI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초기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한다.

② 전담기관은 정해진 공모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데이터 활용을 희망하는 수요기업을 선정하여 수요기업 1개 기업당 지원금 한도 내에서 데이터바우처를 지원한다.

③ 데이터바우처 지원 제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E-mail, Fax, 전화를 통한 홍보 목적의 단순 데이터 활용

2. 목적성이 없는 호기심의 데이터 활용

3.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목적으로 데이터 활용

4. 당해 연도에 동일한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정부지원 사업을 지원 받은 경우

④ 수요기업은 데이터바우처 신청 시 지원부문에 맞게 데이터 구매 또는 가공서비스를 신청하되, 전담기관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타 지원부문 서비스를 일부 혼합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⑤ 데이터바우처는 매칭 조건으로 지원하며 수요기업 규모별로 차등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민간부담금이 결정된다.

1. 데이터바우처 민간부담금은 수요기업이 데이터바우처를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정부정책에 따라 민간부담금 비율은 변경될 수 있다.

2. 민간부담금은 현물과 현금으로 구성되며 지원기업 규모에 따라 민간부담금 구성 비율을 차등화할 수 있다.

3. 민간부담금 중 현물은 (수요기업의 사업계획에 따라) 일부 또는 전체를 현금으로 대체하여 협약할 수 있으며, 협약한 금액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⑥ 수요기업은 데이터바우처 신청을 위해 데이터바우처 포털에 등록된 데이터 상품 및 가공서비스를 확인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수행계획을 전담기관이 요구한 서류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계열회사 관계인 경우, 수요기업·공급기업 매칭이 제한된다.

⑧ 데이터바우처를 신청하는 수요기업 중 휴·폐업, 부정당사업자, 세금체납, 사업참여 제한, 기업 신용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⑨ 데이터바우처는 단년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년도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

1. 데이터 구매 바우처에 참여한 수요기업이 차년도 데이터 가공 바우처에 신청하는 경우
2. 데이터 바우처 기 참여 수요기업 중 혁신서비스 개발 등 우수기업으로 전담기관장이 정하는 경우
3. 청년기업 중 창업 및 지속적인 데이터 활용을 통한 혁신지원이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⑩ 데이터바우처를 지원받는 기업은 서비스·제품 개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전략 수립·시행 결과에 대한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⑪ 데이터바우처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회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지원 트랙을 마련하여 수요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조건, 지원 일정을 명시한 별도 계획 및 공모안내서를 수립하여 전담기관장의 승인 하에 시행한다.

⑫ 데이터바우처는 특수 목적, 정책결정에 따라 별도 형식의 공모를 실시하여 데이터 활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 지원부문, 방법, 조건, 일정을 명시한 별도 계획 및 공모안내서를 수립하여 전담기관장의 승인 하에 시행한다.

제12조(데이터바우처 신청방법) ① 데이터바우처를 신청할 수요기업은 공모안내서에 명시된 접수 방법에 따라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수요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평가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그 밖에 데이터바우처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모안내서 또는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13조(데이터바우처 선정평가) ① 전담기관은 평가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수요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비, 수요·공급기업 간 협의 사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데이터바우처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지원대상의 기본요건에 대한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심사대상으로 결정한다.

③ 전담기관은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의 협조를 통해 분야별 접수된 신청기업의 지원 필요성 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를 선정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수요기업의 협약 포기 여부에 따라 전담기관은 후순위로 선정된 수요기업을 데이터 바우처 지원기업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⑤ 선정평가 결과에 대해 방법 및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수요기업은 선정평가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접수 후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용 또는 반려 여부를 결정 및 통보한다.

⑦ 위원회 심의 결과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한 경우 전담기관은 해당 사업 내용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재평가 결과에 대한 수요기업의 이의신청은 불가하다.

⑧ 그 밖에 데이터바우처 선정평가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모안내서 또는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한다.

- 제14조(데이터바우처 지원 협약) ① 데이터바우처에 선정된 수요기업과 매칭된 공급기업은 전담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기간 내 온라인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공급기업 또는 수요기업이 내부 사정에 따라 협약을 포기할 경우 전담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협약 포기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③ 전담기관은 협약을 포기한 공급기업 또는 수요기업을 대신하여 차순위 공급기업 또는 수요기업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사업 일정, 대체 공급기업 또는 수요기업과 협의사항 등을 검토한 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4장 데이터바우처 사업 수행·관리

- 제15조(공급기업 선금·잔금 지급) ① 전담기관은 협약서에 명시된 정부지원금을 기준으로 공급기업에 선금, 잔금으로 나누어 데이터바우처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
- ② 전담기관은 협약 후 선금지급을 위해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으로부터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은 전담기관이 정한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전담기관은 제출서류의 오류 여부를 검토하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서류 제출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급기업에 선금을 지급한다.
- ④ 전담기관은 수요기업의 사업 결과평가 및 공급기업의 감리 완료 이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잔금을 지급한다. 다만, 전담기관은 사업일정, 정부정책을 고려하여 협약 체결 시 잔금 지급 시기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⑤ 전담기관은 잔금 지급 시 제재 등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미지급된 정부지원금의 지급거절도 포함)할 수 있다.
- ⑥ 공급기업은 제5항에 따른 제재 조치가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⑦ 제5항에 따른 잔금지급 거절 및 기지급 정부지원금 환수의 기준, 절차는 세부운영지침 및 협약서로 정한다.

제16조(데이터 제공 및 검수) ① 데이터 검수 절차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된다.

1. 예비조사: 공급기업 산출물 제출 확인(사업관리시스템)
  2. 감리: 점검 항목에 따른 감리
  3. 시정조치: 감리 결과 부적합 시, 시정조치 사항 이행여부 확인
  4. 감리완료: 감리 최종결과 반영(적합/부적합)
- ② 협약 후 공급기업은 선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수요기업과 협의하여 데이터 상품 제공 또는 데이터 가공 업무를 수행한다.



- ③ 판매기업은 협약 시 수요기업과 협의하여 제출한 과제협의서에 명시된 데이터 범위, 전달 방법을 준수하여 데이터 상품의 공급을 추진한다. 협약 이후 판매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데이터 제공을 미루는 경우 수요기업은 전담기관에 관련 사실을 즉시 고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담기관은 판매기업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판매기업은 전담기관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 ④ 가공기업은 협약 시 수요기업과 협의하여 제출한 과제협의서에 명시된 데이터 가공 범위, 전달방법을 준수하여 데이터 가공 또는 데이터 상품 제공을 추진한다. 협약 이후 가공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데이터 가공업무의 착수를 미루는 경우 수요기업은 전담기관에 관련 사실을 즉시 고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담기관은 가공기업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공기업은 전담기관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 ⑤ 공급기업은 제공 데이터 및 가공서비스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의 하자보수 기간이 포함된 하자보수 계획을 수요기업과 협의,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은 하자보수 계획과 별개로 유지관리 계약을 상호 협의하여 체결할 수 있다.
- ⑥ 전담기관은 공급기업이 협약된 내용으로 수요기업에 데이터 상품 제공 또는 데이터 가공 업무 수행 여부를 검수한다.
- ⑦ 공급기업은 전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수에 응해야 하며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간 임의로 변경한 내용은 검수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⑧ 전담기관은 정확한 검수를 위해 외부 감리법인을 지정하여 검수를 진행할 수 있다.
- ⑨ 공급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수를 거부하는 경우 전담기관은 공급기업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기업은 즉시 응하여야 한다.
- ⑩ 검수 결과 데이터 상품 제공 또는 데이터 가공업무 수행 현황이 미흡한 경우 감리기관은 추가 검수를 실시할 수 있다.
- ⑪ 공급기업이 전담기관의 시정조치 요구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전담기관은 해당 공급기업에 지급한 정부지원금의 환수, 협약의 해약, 부정당사업자 등록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수요기업 이행점검 및 교육) ① 전담기관은 수요기업의 사업수행 내용을 확인하고 성실한 사업 수행을 독려, 수요기업의 사업 추진 애로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② 수요기업이 이행점검 시 수요기업의 폭행·폭언·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이행점검을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이행점검을 중단할 수 있으며, 허위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 전담기관은 해당 수요기업에 협약의 해약, 정부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수요기업의 현장 이행점검 시 사업완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필요 시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을 방문하여 문제사항을 확인하고 지도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이행점검 결과 확인한 수요기업 문제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요기업은 정해진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시정조치 결과 또는 시정조치 계획을 회신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은 효율적인 이행점검 실시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은 수요기업의 데이터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 혁신적인 사업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데이터 역량 강화교육은 의무 교육 또는 선택 교육으로 구분되며, 세부교육 일정 및 내용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공지하여 실시한다.

제18조(수요기업 민간부담금 이행점검) ① 전담기관은 수요기업의 사업 추진 중 민간 부담금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부담금 이행에 문제가 있는 수요기업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수요기업이 전담기관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전담기관은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수요기업 사업 결과평가 시 민간부담금 이행 여부를 수요기업에 안내하고 정해진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민간부담금 이행을 점검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수요기업 민간부담금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협약의 변경) ①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협약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관리규정 제29조 제2항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협약내용 변경 : 과제협약사항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2. 협약정보(단순정보) 변경 : 기업 정보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②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은 제1항의 협약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담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협약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협약 변경 신청을 검토한 결과 신청 사유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그 외 구체적인 협약변경 사항은 세부운영지침을 따른다.

제20조(협약의 해약) ①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협약은 임의로 해약할 수 없다. 다만, 아래의 각 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급기업 또는 수요기업은 전담기관에 협약의 해약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수행인력 퇴사로 인하여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이 휴·폐업한 경우

3. 수요기업이 관련 사업 수행을 포기하여 데이터 활용이 필요 없게 된 경우

4.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약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거래 내용 및 조건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5.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협약 위반 사유 발생 및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6. 수요기업이 현장 이행점검에 응하지 않는 경우

7. 협약 이후 수요기업의 사업계획서, 과제협의를 시 및 기타 협약 시 제출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8. 협약 이후 수요기업이 미지정 판매·가공기업과 매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9. 공급기업이 데이터 제공·데이터 가공 검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
  10. 협약 이후 수요기업이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기업과 매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1.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에 정부지원금 일부 환급 등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된 경우
  12. 수요기업이 사업 결과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13. 수요기업이 별다른 사유 없이 민간부담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4. 기타 협약 이후 지원 부적격 기업 또는 매칭 제한 기업에 해당 사실이 확인된 경우
- ②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은 제1항의 협약 해약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담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협약의 해약을 신청하고, 전담기관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승인여부 및 관련 절차를 통보한다.
- ③ 전담기관은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협약 해약 신청을 검토한 결과 신청 사유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수요기업은 동일 사유로 협약 해약을 재신청할 수 없다.
- ④ 전담기관은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이 전담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사업수행 기간 중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사유로 인해 협약이 해약되는 경우 전담기관은 해당 기업의 귀책사유에 따라 제15조 제5항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⑤ 사업 수행 기간 중 특정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의 부정수급, 부정행위 등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에 대해 전담기관은 자체조사 실시 및 부정심의위원회(감사실 주관)를 개최할 수 있으며 대상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은 성실히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⑥ 제5항에 따른 신고 및 조사가 진행될 경우, 정부지원금의 집행은 중지하며,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혐의없음으로 결정되면 신속히 정부지원금 집행을 한다.

제21조(수요기업의 공급기업 대체 조건 및 협약 절차) ①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요기업이 공급기업 대체가 필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전담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공급기업 대체를 신청할 수 있다.

1. 협약 대상 수요기업과 매칭된 공급기업이 협약을 거부하거나, 부정수급 문제로 협약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2. 매칭된 공급기업이 휴·폐업 하는 경우
  3. 매칭된 공급기업이 데이터 제공·가공 분야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4.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5. 매칭된 공급기업의 부정수급 등 문제 발생으로 공급기업 자격이 중단되어 협약을 해약하여야 하는 경우
- ② 수요기업이 공급기업 대체를 신청한 경우 전담기관은 수요기업의 잔여 사업기간

및 공급기업 대체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공급기업 대체 여부를 승인한다.

- 제22조(수요기업 사업결과 평가) ① 전담기관은 수요기업의 협약 종료 이전, 수요기업의 사업 결과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일정 및 방법을 수요기업에 공지한다.
- ② 수요기업은 전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전담기관은 수요기업이 제출한 사업 결과평가 서류를 검토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수요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기관이 지정한 방법으로 정해진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전담기관은 해당 수요기업을 사업 결과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④ 전담기관은 정해진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수요기업의 사업결과를 평가하여 수요기업에 통보하고, 수요기업은 사업 결과평가 방법 및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전담기관은 이의신청 접수 후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용 또는 반려 여부를 결정하여 안내한다.
- ⑥ 전담기관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결과평가 결과가 미흡인 수요기업에 대해 정부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23조(참여기업 성과 제출) ① 데이터바우처에 참여하는 수요기업, 공급기업은 데이터바우처 사업의 성과창출을 위해 전담기관이 시행하는 성과 제출 및 조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② 전담기관은 제1항의 성과조사에 응하지 않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에 대해서는 제 28조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 제24조(데이터바우처 운영조정위원회) ① 전담기관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조정위원회”,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규정위원회”, “부정심의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데이터바우처 위원회의 위원 후보단은 다음과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로 5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
  2. 대학 또는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자
  3.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해당 분야 관련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해당 분야 관련기관에 재직하는 자로서 부서장급 이상의 경력 소지자

③ 위원회 운영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 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위원회에 재참여 할 수 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전담기관 직원
2. 데이터bauer 지원사업의 참여수행자
3. 데이터bauer 지원사업의 협약기관(수요기업, 공급기업)에 소속된 자
4. 그 밖에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5. 기타 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④ 전담기관은 위원이 불성실한 평가·심의를 하거나 협약 상대방 및 참여기관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을 박탈함과 동시에 해당 위원의 평가 및 심의 결과를 배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재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와 부정심의위원회의 경우 전담기관은 공문을 통해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안의 의결 결과에 대해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⑧ 운영조정위원회는 데이터 산업분야 기술, 정책 분야별 전문가 최소 4인이상 7인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운영조정위원회 개최 시마다 위촉한다.

⑨ 평가위원회는 데이터 유통·활용·기술·비즈니스 분야 전문가, 법률·회계 전문가 등 5인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⑩ 심의위원회는 심의 내용의 성격에 맞게 법률 또는 회계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하며 임기는 사업 수행년도를 기준으로 1년으로 하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선정평가 후 부문별 지원금 조정 심의의 경우 회계·데이터 비즈니스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기타 사업 과정의 조정·의결이 필요한 심의를 진행할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⑪ 운영조정위원회,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는 5인 위원 중 최소 과반 이상 참여한 경우 운영할 수 있다.

⑫ 규정위원회는 정부지원 사업 및 법률자문 전문가 3인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규정 및 사업운영지침을 심의한다.

⑬ 부정심의위원회는 법률, 공공, IT 등 전문가 등 5인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수요기업, 공급기업의 부정행위 조사 결과 및 제재 수준을 심의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25조(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분쟁 처리) 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 내용에 대해 전담기관에 즉시 고지하고 전담기관은 분쟁 내용을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분쟁에 대한 조정을 희망할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제26조(사업 이의제기 신청 절차) ①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방법 및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급기업 지정, 수요기업 선정 및 각종 결과 평가, 점검결과 등의 경우 전담기관이 관련 내용을 공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접수 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용 또는 반려 여부를 결정하여 안내한다.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하기 위해 이의제기 신청자가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관련 내용을 소명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 내용이 관련 위원회 심의결과를 번복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전담기관은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27조(부정행위의 확인 및 처리방안) ① e-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해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신청,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는 등 부정행위가 신고된 경우 전담기관은 자체조사, 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재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부정심의 대상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은 부정심의위원회 처분 결정 사항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이의신청 적정성은 부정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다.

③ 전담기관은 협약 전 공급기업이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협약에서 배제되는 경우 매칭된 수요기업에 공급기업 대체 매칭 방안을 제안하여 수요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④ 전담기관은 협약 후 공급기업이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제재를 받게 된 경우 해당 공급기업과 매칭된 수요기업의 공급기업 대체를 허용하여 수요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⑤ 부정행위의 확인 및 처리방안은 전담기관의 「보조금법 위반 사안 조사·처리 업무 지침」에 따른다.

제28조(그 외 바우처 참여기업의 제재) ① 수요기업·공급기업에 대한 제재 절차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된다.

1. 제재 사유 발생
2. 필요 시 사전 조사 실시(전담기관)
3. 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4. 제재 결과 통보
5. 이의신청 접수
6. 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

## 7. 최종 제재 결과 통보

### 8. 제재 시행

- ② 전담기관은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에 대한 제재사항이 발생한 경우 전담기관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기업의 제재 수준을 의결한다.
- ③ 제재 심의 시 적정한 법률적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법률전문가를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시켜 구성한다. 다만, 제재 대상 기업과 관련이 있거나 친족 관계인 사람, 제재 대상 기업에 소속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 ④ 제재 심의 안전에 대해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사전조사 실시 또는 제재 대상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⑤ 제재 결과 통보 후 제재 대상 기업은 7일 이내에 제재 결과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⑥ 심의위원회는 제재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한 후 수요기업 또는 공급기업 제재 기준을 고려하여 참여제한 및 기간, 정부지원금 환수, 경고 등의 제재 수준을 의결한다.
- ⑦ 전담기관은 제재 심의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며 문서에는 처분 내용, 담당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⑧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에 대한 제재 사유 및 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 ⑨ 제재 조치와 관련하여 참여제한 기간 및 환수 절차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제29조(데이터바우처 사업에 참여한 수요기업 홍보 기준) ① 수요기업이 데이터바우처 사업을 통해 수행한 사업의 결과를 공개하거나 대외 발표를 추진할 경우 데이터바우처 지원을 통해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 ② 수요기업은 홍보 콘텐츠 또는 발표자료 제작 시 데이터바우처 로고, 사업명칭, 전담기관 명칭 및 로고를 병기하여 제작하되 수요기업과 전담기관이 혼동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별표 1] 수요기업 제재 기준

사례구분	제재조치사유	경고	참여제한	정부지원금 환수
협약 불이행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협약서에 명시된 공급기업과 협업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	○
	○ 정당한 사유 없이 민간부담금 이행, 데이터 활용 등 사업 수행 계획서·협약서에 정의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	○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	○	○
	○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점검에 응하지 않는 경우	○	○	○
	○ 정당한 사유 없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	○
	○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기관의 서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	○
	○ 휴·폐업으로 인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
	○ 사업참여 외 인력이 이행점검 담당자로 참여한 경우	○	○	○
	○ 전담기관의 통보·승인 없이 임의로 데이터 제공·가공 범위 등 협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	○
	○ 정보변동 등 전담기관에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변경신청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경우	○	○	○
	○ 정당한 사유없이 데이터 수령을 거부한 경우	○	○	○
○ 관련 규정, 사업운영지침, 기타 가이드 미숙지 등으로 사업수행에 혼선을 초래한 경우	○	○	○	
부정·청탁·허위사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
	○ 공급기업과 모의하여 정부지원금을 편취한 경우		○	○
	○ 공급기업과 매칭을 대가로 물품을 요구한 경우		○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
	○ 허위로 사업참여 인력을 기재한 경우		○	○
	○ 고의로 결과보고서를 허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
	○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기관의 이행점검에 응하지 않은 경우	○	○	○
사업 결과	○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평가내용이 불량한 경우	○		
	○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사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		
	○ 사업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	○	○
보안	○ 공급기업 제공한 데이터를 협약 범위 외 남용한 경우		○	○
	○ 공급기업이 제공한 데이터를 무단으로 대외 유출, 유통한 경우		○	○
기타	○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기관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	○	○
	○ 정당한 사유없이 전담기관의 성과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성과분 석용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	○



[별표 2] 공급기업 제재 기준

사례구분	제재조치사유	경고	참여제한	정부지원금 환수
협약 거부 불이행	○ 협약 대상 공급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요기업과 협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	○	
	○ 정당한 사유 없이 데이터 판매, 가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	○
	○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	○	○
	○ 사업수행 과정 상 수요기업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등 공급기업 활동이 불성실한 경우	○	○	○
	○ 수요기업과 잦은 분쟁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	○
	○ 휴·폐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데이터 판매, 가공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
	○ 전담기관의 통보·승인 없이 임의로 데이터 제공·가공 범위 등 협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	○
	○ 정당한 사유 없이 데이터 제공 또는 데이터 가공 일정을 지연하여 수요기업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	○	○
	○ 정보변동 등 전담기관에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변경 신청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경우	○	○	○
	○ 정당한 사유없이 데이터 수령을 거부한 경우	○	○	○
○ 관련 규정, 사업운영지침, 기타 가이드 미숙지 등으로 사업수행에 혼선을 초래한 경우	○	○	○	
부정·청탁· 허위사실	○ 공급기업이 수요기업 모집을 위해 허위·과대·과장 광고를 실시하여 전담기관의 시정조치 요구를 1회 받은 경우	○		
	○ 허위·과대·과장 광고에 대한 전담기관이 시정조치 요구에 불응하거나, 시정조치 이후 재적발된 경우		○	
	○ 거짓·허위사실·청탁·알선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공급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	○
	○ 수요기업 모집 의뢰·알선에 대한 대가 지급, 다단계 방식의 수요기업 모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요기업과 매칭한 경우		○	○
	○ 매칭 대가로 수요기업에 정부지원금 또는 현물을 환급하는 경우 ※ 공급기업이 개발·보유한 데이터 분석·가공 등 S/W, 솔루션의 무상 이용 혜택 등은 해당 없음		○	○
	○ 고의로 데이터 제공·가공 참여 인력을 부풀려 협약한 경우		○	○
	○ 데이터 제공·가공 비용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협약한 경우		○	○
	○ 협약, 감리 등 진행 시 허위 서류 또는 증빙을 제출한 경우		○	○
보안	○ 정당한 절차 없이 수요기업의 비즈니스 기밀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	○
	○ 사업을 통해 습득한 수요기업 정보가 공급기업 관리 소홀로 누출된 경우		○	○
기타	○ 제출서류 및 협약 내용 오기재로 선정 평가 또는 사업 추진에 영향을 주는 경우	○	○	
	○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기관 감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	○
	○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기관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	○	○
	○ 정당한 사유없이 전담기관의 성과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성과분석용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	